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2. 7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1.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2. 1
- 라. 上程日字 : 2000. 2. 7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公職사회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23조제2항).
-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에 “조기퇴직”예정자에 대하여도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33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 (제 회)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1. 3/ .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2000. 1.
제출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주요골자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23조제2항)
- 여성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 퇴직준비휴가 대상자에 “조기퇴직”예정자에 대하여도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9항)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필요없음.
-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공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p> <p>6. ~ 8.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③<u>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신설></p> <p>④·⑤ (생략)</p>	<p>제22조(공가)-----</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p> <p>-----</p> <p>-----</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③<u>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④<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재직기간 중에----- ----- -----</p>
<p>⑦(생략)</p>	<p>⑧(현행 제7항과 같음)</p>
<p>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생략)</p>	<p>⑩(현행 제9항과 같음)</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 -----</p>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생략)	(생략)	결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회갑	(생략)	(생략)	회갑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출산	배우자 (처)	(생략)	출산	배우자	(현행과 같음)
사망	배우자	(생략)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현행과 같음)
	자녀	(생략)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탈상	배우자	(생략)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략)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